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244
----------	-----

제출년월일 : 2002. 2.

제출자 : 서초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은 부과권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촉진기금을 마련하고 관리 · 운용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관리(안 제2조 내지 제6조)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 내지 제10조)
- 라. 기금운용계획 등(안 제11조 내지 제15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입법예고(2001. 10. 8~10. 30)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서비스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2. 서초구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용자 또는 보조사업
3.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생활복지국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 등의 복지담당주사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2. 장애인복지 및 편의시설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관리,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과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금관리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 ①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 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시설을 법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주로 한다.

② 기금의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보조금의 관리)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보조금이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주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 내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주가 융자금 및 보조금을 사용용도에 반하여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융자금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초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